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7호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9 9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 부개정규칙	2
○ 규	칙 제 9 9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 규	칙 제 1 0 0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 칙 일부개정규칙	13
○ 규	칙 제 1 0 0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7

훈 령

○ 훈	령 제 3 5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규정	30
-----	-------------	--------------------------------------	----

공 고

○ 공	고 제 9 9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공	고 제 1 0 1 5 호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43
○ 공	고 제 1 0 1 6 호	2019년 남동 Quick배달 강화 신청 공고	45
○ 공	고 제 1 0 1 7 호	2019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공고	54
○ 공	고 제 1 0 2 0 호	공영주차장(진주 제4호)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55
○ 공	고 제 1 0 2 1 호	남동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58
○ 공	고 제 1 0 3 2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61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9 8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3
○ 의 회 사 무 공 고	제 9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원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5
○ 보 건 소 공 고	제 4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02
○ 남 동 다 문 화 사 업 소 공 고	제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5월 24일

남동구 규칙 제9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 중 “2”를 “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동전화”를 “휴대전화”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패용하여야”를 “달아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구청의 당직실”을 “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당직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 당직사령”을 “인천광역시 당직사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 직 근 무 자 편 성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부서별	연 휴 외 의 경 우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구 청 (보건소 포함)	○ 당직사령(6급)	1명	○ 당직사령(과장급)	1명
	○ 당 직 원	3명	○ 당직보좌관(6급)	1명
			○ 당 직 원	3명
평생학습관	○ 당 직 원(재택근무)	1명	○ 당 직 원(재택근무)	1명
출장소	○ 당 직 원(재택근무)	1명	○ 당 직 원(재택근무)	1명
동	○ 당 직 원(재택근무)	1명	○ 당 직 원(재택근무)	1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관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라 당직근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됨을 반영하여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당직근무자 운영방식에 맞추어 당직근무자편성인원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수당을 60,000원으로 인상(제5조제2항)
- 당직근무자편성 정비(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리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5월 24일

남동구 규칙 제9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인천광

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으로, “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센터장”을 “센터장, 부장 1명”으로, “8명”을 “9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센터 내부”를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로 한다.

제13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를 “「남동구 공인 조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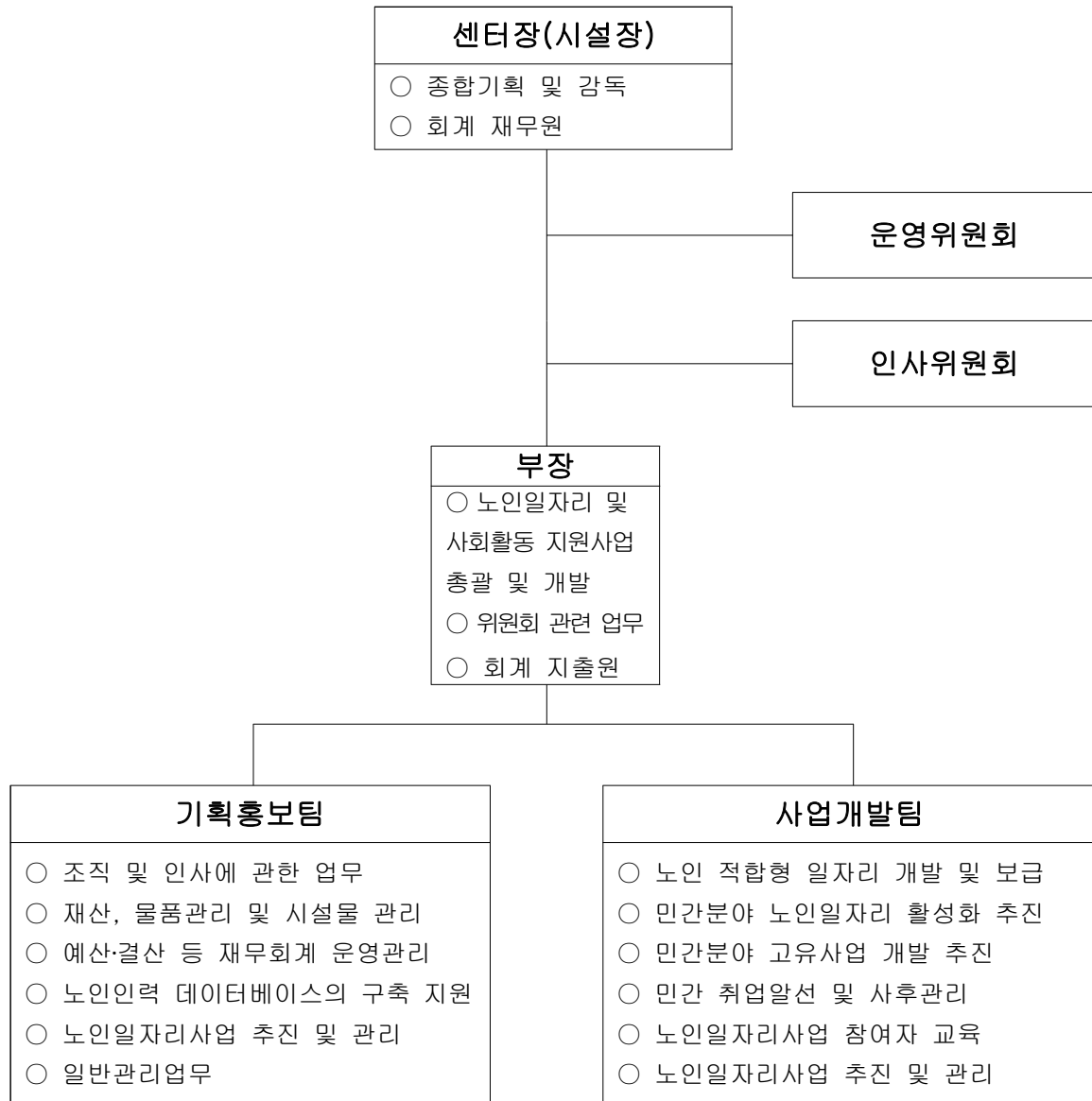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10조 관련)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센터장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직	1급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급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정보처리, 회계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제11조 관련)

구 분	계	센터장 (시설장)	일 반 직			
			1급 (부장)	2급 (팀장)	3급 (대리)	4급 (주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9	1	1	2	3	2

[별표 3]

공인의 규격(제22조 관련)

< 센터장의 직인 >

3cm	
남동구노인인력 개발센터장인	3cm

< 운영위원장의 직인 >

3cm	
남동구노인인력 개발센터운영위 원회위원장인	3cm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준용, 규칙 일부개정으로 직원 정원 충원 및 직급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정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 조직의 정원(증 1명) : 부장 등, “8명 이내로”를 “9명 이내로”(제8조)
- 직원채용 및 자격기준[별표1] 일부내용 수정(제10조)
- 조직체계 및 정원[별표2] 일부내용 수정(제11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5월 24일

남동구 규칙 제10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를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의”로, “의하여”를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를 “이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	지급액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제조업자 5만원 유통관련업자 3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5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5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5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5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5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5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경우	5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5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3만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의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취지를 살리고자 지급조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및 지급조건 제한(제6조, 제7조)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제8조)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상위법에 맞게 정비, 포상금 지급액 현실화(별표)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5월 24일

남동구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관 내의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지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독서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독서 가족회원”이란 회원 중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단위로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외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14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 고성방가,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사교육, 무단집회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의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독서회원)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서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독서회원(책이음 회원 포함)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가입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 회원가입을 한다.

1. 중학생이상 일반인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2.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 : 주민등록등본
3. 인천광역시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람 :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4. 인천광역시에 거주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는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신분증

④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⑤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 회원증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회원증을 훼손하였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고,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2일 이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대출은 불가하다(재발급시 제3항의 구비서류 지참).

⑦ 독서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독서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독서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8조(독서 가족회원) ① 관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서 가족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서 가족회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개별 회원증(실물)
3. 가족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확인 후 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독서회원의 자격상실) ① 독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회원관리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반환) 열람자가 퇴관할 때에는 열람 자료를 제자리에 두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 ② 자료 대출은 1인당 최대 5권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

일로 한다. 다만, 독서진흥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7일간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다음 날부터 직접방문 또는 전화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자료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이 반납자료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의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자료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최종 반납자료의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에 반납한다.

④ 반납기한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5조(자료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6조(기증자료) 관장은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장서점검)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도서관 자료실 별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료를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④ 시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구민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이 구성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 중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남동구청장”으로 발급한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제4조 관련)

구 분	이용시간		이용대상	비 고
	화 ~ 금	토 · 일		
자 유 열 람 실	06:00~22:00		청소년(중학생)이상	
종 합 자 료 실	09:00~18:00		청소년(중학생)이상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유아 · 어린이 및 보호자	소래·서창 도서관
	수요일 연장운영 (09:00~20:00)			
디지털자료실	09:00~18:00		청소년(중학생)이상	

[별지 제1호서식]

독서 가족회원 신청서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회원번호	비밀번호	동의 서명 (초등학생 이하 생략)
본 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정한 관계규정 및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대출을 위한 가족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장 귀하

증
빙
서
류

- 가족회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유
의
사
항

- 대출 도서의 분실 등 문제 발생시 가족회원 전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 독서 가족회원 신청서는 독서회원 가입신청 후 필요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_____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 락 처	
공연·행사 개요	○ 행 사 명 : ○ 주 최 및 후 원 : ○ 참여대상 : (총 _____명) ○ 행사내용 :				
사 용 시 설	□세미나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부대설비()				
사 용 기 간	. . . ~ . . .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첨 부 서 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장 귀하					

-----절-----취-----선-----

접수번호 : _____

()도서관 사용신청 접수증

○ 사용기간 : . . . ~ . . .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와 같이 ()도서관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도서관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남, 여)
사 용 시 설	☐ 세미나실 ☐ 디지털자료실 ☐ 다목적실 ☐ 부대설비()			
사 용 기 간	. . . : ~ . . .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료	₩ (금 원)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 및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 전부개정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구민의 지식정보 향상과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단위의 도서관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독서 가족회원’에 관한 사항(기준 및 신청방법) 신설(제2조, 제8조)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분리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중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규칙 제18조 ~ 제20조)
- 조례에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자를 구청장에서 관장으로 변경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 도서관 서비스의 명칭변경과 독서회원 자격상실 규정 미비점 보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제2조 및 제9조)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5월 24일

남동구 훈령 제3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남동구 도서관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남동구립도서관”을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게시”를 “게시(도서기증 우수회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향조정”을 “상향조정(기증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제4조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남동구립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도서 기증 우수회원의 범위와 예우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들의 도서기증을 활성화하고 책으로 만드는 행복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항 수정(제1조 및 제3조)
- 도서기증 우수회원 기준 명시 ⇒ 연간 도서 30권 이상 기증자(제4조)
- 도서기증 우수회원 도서 대출권수 상향조정 기한 명시 ⇒ 기증일로부터 1년간(제4조)
-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 추가 ⇒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제4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9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의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총칙 규정(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제14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992, FAX 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의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칙 규정(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제14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 제2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조2, 제8조, 제11조, 제27조, 제47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2
- 「2019년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남동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2, 제8조, 제11조, 제27조, 제4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 육성 정책 시행,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남동구 청소년지도위원, 남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2장 청소년 육성정책

제3조(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3. 청소년 범죄·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4.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육성위원회”)를 둔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청소년담당 과장
3. 관할 경찰서 청소년담당 과장
4. 남동구의회의원
5.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6.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7.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8조(구성) ① 남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한 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보호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1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2. 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소속 학생 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대학생 등

⑤ 청소년 정책 등의 개발과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

제17조(임기) 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청소년 관심분야·특기·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기획, 문화, 교육·홍보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참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연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청

소년들의 의견수렴 활동을 실시한다.

제19조(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사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보상)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남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0조 관련)

(앞면)	(단위:cm)	(뒷면)
청 소 년 지 도 위 원 증 ① 사 진 ⑤ ② ③ ④ ○ ○ 동	0.3 1 4 0.75 0.75 1 0.3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 27 조 에 따른 청소년지도위 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 남동구청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시기 바 랍니다.
5.5×8.1	4.9×8.1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 (3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 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5. 21. ~ 2019. 6. 5.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내역 따로붙임’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로명주소팀(☎032-453-2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상세주소기초조사결과통보공시송달조서

	성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대상	상세주소부여 기초조사 결과	사유
1	임차인 이*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번길 7-12,제1동 101호(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번길 7-12,(도림동)	401 301,302,303 201,202,203 101,102,103	수취인 불명
2	임차인 이*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401호(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도림동)	501 401,402,403,404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	수취인 불명
3	임차인 이*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46번길 17,401호 (장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46번길 17 (장수동)	401 301,302 201,202 101	수취인 불명
4	소유자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46번길 17,401호 (장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46번길 17 (장수동)	401 301,302 201,202 101	수취인 불명
5	소유자 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도림동)	401,402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	수취인 불명
6	임차인 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7,402호(장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7(장수동)	401,402 301,302,303 201,202,203,204	수취인 불명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16호

2019년 남동 Quick배달 강좌 신청 공고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남동 Quick배달 강좌」를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5.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신청접수

- 신청자격 : 10명 이상의 남동구민(관내 직장인)으로 구성된 학습자 팀
※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팀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기간 : 2019. 5. 27(월) ~ 6. 7(금)
- 신청방법 : [강좌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후 아래 택일하여 신청
 - 방 문 처 :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남동구 소래로 645)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 lovejy15@korea.kr (☎453-6054, 유지영)
- 지원내용 : 10개 팀, 팀별 강사로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분야 :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내

분야	강좌 주제 (예시)
인문교양	◇ 은퇴 전후 대비 인생 재설계 및 자기정체성 재정립 프로그램 (예시) 한권의 역사 자서전 쓰기, 인문학 강좌, 독서토론 등
직업능력	◇ 직업·학력·연령별에 따른 취업, 전직, 창업교육 (예시)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준비, 취·창업 자격증 과정 등
시민참여	◇ 시민·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전문 교육 (예시) 청소년 지도사 과정, 상담사 과정 등
문화예술	◇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여가활동 (예시) 토탈 공예, 디지털 사진교실, 천연제품 만들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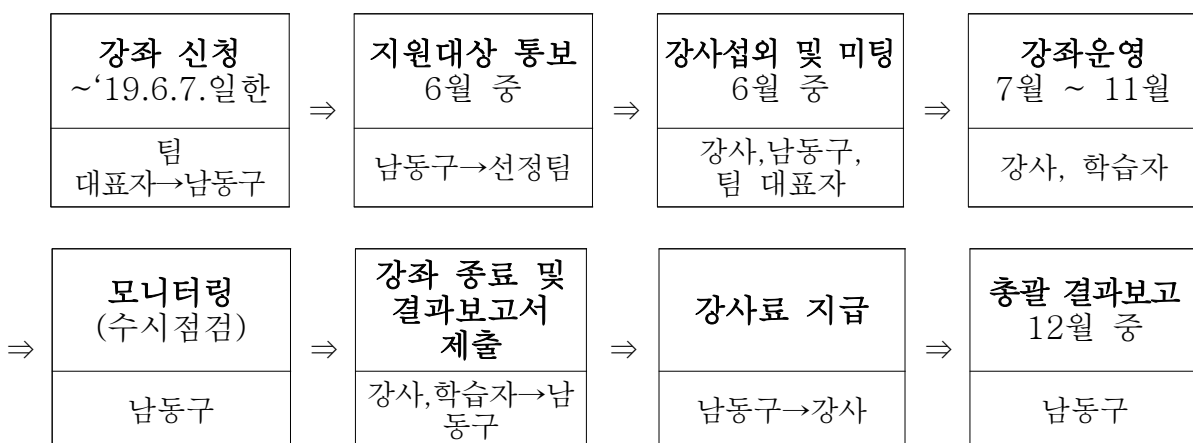
※ 위 표는 개설된 강좌가 아닌 강좌 신청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성인문해, 학력보완, 정규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영리, 종교 목적 강좌는 금지

2. 강좌 운영

- 운영기간 : 2019. 7 ~ 11월 (주1회 2시간, 총 20시간 이내 탄력적 운영)
- 강의장소 : 신청자 희망 장소 (남동구 관내)
 - ※ 교육장 확보 필수 : 도서관, 경로당, 작은도서관, 북카페,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아파트·기업체회의실, 학교 등 (개인 교습소, 가정집 등은 불가)
- 강좌운영
 - 출석부 작성, 강의 사진 기록, 평가 설문 진행 등 강의 관리 철저
 - 출석인원이 50% 이하, 2회 이상인 경우 강좌 지원 취소
 - 강사료는 구에서 강좌 종료 후 지급하며, 재료비·교재비는 학습자 부담이 원칙
- 선정방법
 - 선정 기준표(붙임)에 따라 고득점을 취득한 강좌 순으로 선정
 - ※ 신청강좌 분야, 참여대상 구성, 신청동기 적정성, 참여인원수, 강의 장소 등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심의 후 선정
 - 단 동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 1순위 : 직업능력, 시민참여 분야 -> 2순위 : 학습소외계층 참여
- 강사섭외 : 1순위 : 남동구 강사은행 등록 강사 -> 2순위 : 학습자 희망 강사
 -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 ※ 강사료 지급 기준 : 기본 1시간 50,000원 + 추가 1시간 30,000원 (일 최대2시간)
- 선정 결과 통보 : 2019. 6월 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3. 추진 일정



☐ 문 의 : 남동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453 - 6054, 6056

☐ 남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LL.namdong.go.kr>

【붙임1】 강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남동 Quick배달 강좌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주소	(-)		
연락처		핸드폰 번호	
총학습자수	()명		

● 신청강좌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 원하는 강사가 있을 경우 강사명 기재 강사명 : 강사 연락처 :		
희망일정 (택1) 총 20시간이내	①주1회	■ ()요일	■ 시간 ()시~ ()시 ■ 총 회
	②주2회	■ ()요일 ()요일	■ 시간 ()시~ ()시 ■ 총 회 ()요일 ■ 시간 ()시~ ()시
교육장소 (주소)	※ 교육장소 확보 필수		

● 신청동기 ※ 대상 선정 심사 시 활용 되오니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선정 기준 및 학습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학습자 명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동까지만)	연락처	비고
1	홍길동	00.00.00	남/여	구월4동	0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와 같이 2019년 「남동 퀵배달 강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학습자 대표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퀵배달강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남동퀵배달강좌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남동퀵배달 강좌 신청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동퀵배달강좌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번	성명	동의	미동의	연번	성명	동의	미동의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배달강사	강좌 운영	상기의 정보 수집 항목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동퀵배달강좌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번	성명	동의	미동의	연번	성명	동의	미동의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2019년 월 일

제출자 : 학습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2】 운영 매뉴얼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남동 Quick배달 강좌 운영 매뉴얼

제 1 장 배달강좌 기본 운영

제1조(정 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조(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남동구에 거주하는 성인(남동구 내 직장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자 팀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방법)

학습자 팀의 대표자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전자우편 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상 강좌내용, 교육 장소, 신청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인문교양, 직업능력, 시민참여, 문화예술 분야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성인문해·학력보완, 정규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강좌, 영리 및 종교 목적을 위한 강좌는 신청할 수 없다.

제5조(대상 선정)

선정 기준표에 의거 내부 심사를 통해 강좌 분야, 참여대상 구성, 신청동기 적정성, 참여인원 수, 강의 장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학습 장소)

학습자가 남동구 내에서 교육장소를 사전 확보해야 하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사의 사설근무지, 가정집, 개인 학원 등은 금지)

제7조(강사 섭외)

배달강사는 남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강사은행을 활용하되,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8조(수강료 및 재료비)

배달강좌는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재료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학습자가 부담하되 강사와 학습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9조(현장 점검)

투명하고 공정한 배달강좌 운영을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습자 및 강사는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습자

제10조(학습자 의무)

- ① 학습자는 학습 공동체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강사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 ② 학습자는 반드시 신청 강좌를 성실하게 수강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해야 한다.
- ③ 학습자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성과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좌 수강)

- ① 학습자 1인이 2개 강좌를 동시 수강할 수 없으며, 1년에 1회 수강가능하다.
- ② 1강좌 당 최대 20시간 범위에서 운영하되, 1주에 2시간까지 가능하다.
- ③ 학습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발생하는 결강에 대해서는 보강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출석률이 50% 이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좌 지원이 취소된다.

단, 학습자가 질병, 입원 등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강좌 제한)

같은 해 남동구 지원 사업(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학습프로그램 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학습자는 강좌 신청을 제한한다.

제13조(준수 사항)

학습자는 운영 매뉴얼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강좌 수강 자격을 중지시킨다.

제 3 장 배달강사

제14조(배달강사 의무)

- ① 배달강사는 남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강사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력서 (사진포함)와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배달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경력의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배달강사가 운영할 수 있는 강좌는 연간 1개의 강좌로 제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강사를 구할 수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강사료)

강사료는 기본 1시간 기준 50,000원이며 추가 1시간은 30,000원 1일 최대 2시간 까지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강좌운영 및 관리)

- ① 배달강사는 최초 강좌가 이루어지기 1주일 전까지 운영계획서를 강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출석부, 강의 사진, 강의평가서, 설문지 조사지 등 반드시 첨부) 및 강사료 청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배달강사는 매 강의 시 반드시 출석부에 학습자의 출석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학습시간,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배달강사는 강좌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습자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 사항)

- ① 학습자와 재료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강좌 운영계획서 상에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배달강사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강사연수 등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제18조(강좌 제한)

배달강사가 강좌를 부당 및 편법 운영하였음이 적발 되었을 시에는 남동구 평생 학습센터 강사 자격을 영구 정지시키고 진행 중인 강좌는 자동 종료한다.
(예시: 운영계획서 상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사전 보고 없이 변경 운영한 경우)

【붙임3】 선정 기준표

남동 Quick배달 강좌 선정 기준표

○ 배달 강좌명(팀 대표자) :

연번	심사기준	점수	배점
※	공통사항 : 남동구민 10명이상 성인		
1	신청강좌 분야		
	1. 직업능력 향상 분야	20	
	2. 시민참여 교육 분야	18	
	3. 인문교양 교육 분야	16	
	4. 문화예술 교육 분야	14	
	5. 기초문해, 학력보완 등 교육 분야	지원불가	
2	참여대상 구성		
	1. 학습소외계층 (직장인, 장애인, 노인 등)	20	
	2. 학습소외계층 외	18	
3	신청동기 적정성		
	1. 자발성 및 교육 효과 (우수)	20	
	2. 자발성 및 교육 효과 (적정)	10	
	3. 자발성 및 교육 효과 (미흡)	5	
4	참여인원 수		
	1. 20명 이상	20	
	2. 15명 이상	18	
	3. 10명 이상	16	
5	강의 장소 확보 여부		
	1. 확보	20	
	2. 미확보	지원불가	
총 합 계 점 수		100	

※ 동점 발생 시, 아래 우선 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1순위 : 직업능력·시민참여 분야 → 2순위 : 학습소외계층 참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17호

2019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공고

남동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사회 경험 및 행정체험을 하는 한편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19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5. 31.(금) ~ 6. 7.(금) 18:00한 (8일간)
- 모집인원 : 50명 * 특별모집 : 15명 / 일반모집 : 35명
- 접수처 : 남동구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reservation>)
- 근무기간 : 2019. 7. 1. ~ 7. 30. 09:00 ~ 16:00 (22일간, 주5일 근무)
- 보 수 : 1일 50,100원(교통비 및 식비는 개별부담), 만근 시 주월차수당(5일) 지급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은 실지급 수령액에서 공제하여 고용기관에서 납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1시간 적용
- 근무내용 : 행정업무 및 현장근무(환경정비 분야) 지원
- 자격요건
 - 공고일(2019. 5. 24)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2년간(2017년 하계 ~ 2019년 동계) 남동구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학생
 - ※ 제외사항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방학의 개념이 없는 대학 제외
휴학생 및 유학생(해외대학) 제외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 시 적격자 중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30% 이내) 후 나머지 학생은 전산추첨에 의해 선발
 - * 신청서 기재사항 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여부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신청에서 제외
 - * 특별모집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 소득으로 인한 급여 변동 및 보장중지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여 신청(보장중지 시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함)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2019. 6. 14.(금) 11:00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 (희망 시 참관 가능)
- 최종선발자 공고 : 2019. 6. 17.(월) 10:00 / 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합격자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제출 (서면제출 또는 팩스 032-453-2189)
- 신청자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신청은 당면 무효 처리됨
 - 개별 연락후에도 재학증명서 미제출 합격자는 당면 불합격 처리됨
 - 연락 가능한 개인 전화(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올바르지 않은 연락처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초 근무일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참석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총무과(☎ 453-2233)로 문의바랍니다.

2019. 5.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4번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5.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남동구 만수동 895-4번지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외)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유료화 시행 예정
진주 제4호 공영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895-4번지	43	3급지	2019. 7. 1

4. 월정기 주차요금

주차장명	구 분	급 지	월정기 주차권
진주 제4호 공영주차장	노 외	3급지	40,000원

5.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5. 27 ~ 2019. 6. 23(28일간)

8.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 5. 27 ~ 2019. 6. 23(28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3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진주 제4호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4번지에 설치 되어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21호

남동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남동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공고기간 : 2019.05.27. ~ 2019.06.16. (21일간)
4. 의견제출 : 2019.05.27. ~ 2019.06.16. (21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남동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장소

연 번	주 소	장 소	비 고
1	만수동 895-4번지	공영주차장 내	

8.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

9. 촬영범위 및 시간 : 공영주차장 내 24시간 촬영

10. 운영관리 : 인천광역시 남동구(교통행정과)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안전총괄실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19.06.16일까지 (21일간)

다.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우편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팩스 : 032)453-288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12. 문의사항 : 남동구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032)453-2683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32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수3658, **무0953, **우4230, **부8541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5.23.(목) ~ 6. 7.(금)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5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수3658	박*웅	2019-05-21	폐문부재	미인증 후미등 LED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 ****호(논현동, *****)
2	**무0953	강*희	2019-05-21	폐문부재	트렁크라인 스마일등 LED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호(구월동, *****)
3	**우4230	김*신	2019-05-21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 운행	2153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국포로***번길 60, ***호(구월동, *****)
4	**부8541	공*수	2019-05-23	기타	리플렉터 LED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간석동,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98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제4조)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6조)
-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0. ~ 5. 27. (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남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

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 명칭 :
2. 설립 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당초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연구 주제		
심사 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 활 동 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강화 : (안 제4조 ~ 제5조)
-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 (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한 집행경비 환수규정 신설 : (안 제7조)
- 공무출장계획서 공개 규정 신설 : (안 제8조)
- 출장결과 보고 및 예산 편성·집행 규정 신설 : (안 제9조 ~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2 ~ 5. 28 (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규칙 2019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의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국외출장 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신분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으 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심사기준) 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국외출장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

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제1항 관련)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 권고) 표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유 광 희

[관련법령]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권고)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원(부의장, 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사회단체대표, 대학교수 등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민간위원 중 이직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여행목적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명 이하의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현장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제10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20일전까

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4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6. 1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5. 23. ~ 2019. 06. 07. (16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 음식점	2016- 0199089	60계치킨 구월점	김*영	구월로 212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4.12	2019.06.10.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6. 0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19. 0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다문화사업소 공고 제201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5. 21.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명확한 근거 마련과 남동구 복지특화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8조제1항제10호)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월임대료 본인부담금, 관리비 등)
- 지원대상 단서 신설 : (안 제7조)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4 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남동다문화사업소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다문화사업소/☎ 453-6497, FAX 453-22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의 명확한 근거 마련과 남동구 복지특화사업의 기반을 강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8조제1항제10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월임대료 본인부담금, 관리비 등)
- 지원대상 단서 신설 : (안 제7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4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2019년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계획(별첨)
-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